




제141회 시의회 임시회  
교 통 위 원 회  
2003. 4. 15 ~ 4.29

# 주요 업무 보고

 지하철 건설본부

# 목 차

□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추진 .....	1
○ 민자유치사업 협상 추진	
○ 903정거장 위치변경 민원처리	
□ 지하철 3호선 연장건설 추진 .....	6
□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확충 .....	8
○ 종로3가역 수평자동보도 설치	
○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완공분 이관	
□ 서울월드컵경기장 중재 판정 .....	11

#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 추진

## 1. 지하철9호선 민자유치사업 협상 추진

지하철 9호선건설에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입과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던 중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칭 『서울도시철도9호선주식회사』와의 협상이 '03.44 종료됨에 따라 9호선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 고시 추진

###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김포공항~여의도~고속터미널(1단계구간, L=25.5km)
- 유치범위 : 토목공사를 제외한 건축, 설비, 차량, 궤도, 신호·통신분야 건설 및 운영
- 사업비 : 8,503억원(2000년 불변가격)
  - 민간자본 : 4,938억원(58%), 시비지원 3,565억원(42%)
- 사업기간 : 2004~2007
- 추진방식 : BTO(Build Transfer Operate)
- 운영권 부여 : 공용개시일로부터 30년간

### □ 추진경위

- '01.10.31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336호)
- '02. 4. 1 : 사업계획서 제출(1개 콘소시엄 단독 제출)
  - ※ 울트라건설(40%),Parsons(20%),머큐리(15%),로템(10%),쌍용(10%),강원레일테크(5%)
- '02. 5.13 : 협상대상자 지정

○ '02. 5~12 : 양측 협상단 협의(총121회)

### 《주요 쟁점사항》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시 사업제안자의 재무상태가 취약하므로 협상중 출자자를 보완토록 하였으나 미보완
- 주간사의 자금조달을 관계사 및 금융기관등 외부에서 조달기로 하였으므로 대출 조건을 명확히 하도록 보완요구 하였으나 미제출
- 현저한 사업비 차이(+1,855억원고사8,503억원⇒10,358억원제출) 및 증가 사유 미제출
- 운영계획 및 운영조직 보완서류 미제출

○ '02.12.31 : 출자자 보완등 자료보완시까지 협상 중단 통보('03.1.17한)

○ '03. 1.17 : 보완 자료 일부 제출

- 자료보완 미비, 추가 자료 보완을 위하여 2월말까지 연기 요청

○ '03. 1.30 : 보완 서류 제출기한 연기 승인

- '03.2.28한 구체적 보완내용 미제출시 협상 결렬 예정임을 통보

○ '03. 2.28 : 보완 사업계획서 제출

- 주간사를 한진중공업으로 변경 제안하고 출자비용 조정 제안
  - 울트라건설 비율 하향 조정(40%⇒25%이하), 타 출자자는 추후 조정
- 총사업비 : 9,970억원(고시금액 대비 증 1,467억원)
- 주간사 변경에 따른 투자계획등의 보완위한 추가 기간 요구('03.3.31)

- '03. 3.31 : 사업제안자 의견서 제출
  - 출자자간 이견으로 한진중공업을 주간사로 하는 신규콘소시엄 구성못함
  - 기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기존콘소시엄으로 협상 재개 요청
  - (주)로템 위주의 출자자구성을 위한 추가 소요기간 요구('03.4.15)
  
- '03. 4.2 : 보완내용에 대한 본 협상단회의 개최
  
- '03. 4.4 : 협상종결 통보(시정연 ⇒ (주)울트라건설 콘소시엄)

#### □ 보완내용에 대한 본 협상단회의 개최 결과(협상종결)

- 충분한 기일을 부여하였음에도 보완되지 않고 있으므로 협상종결 필요
- 주요 종결 사유
  - 사업제안자의 건전한 재무상태를 위한 출자자 보완 미흡
  - 주간사의 자기자본조달 불확실
  - 현저한 총공사비 차이(+1,467억원;고시8,503억원 ⇒ 9,970억원 제출) 및 증가 사유 불명확
  - 운영계획 및 운영조직 미제출로 수익률등 사업성 협상 곤란
- 조속한 시일내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재공고 건의

#### □ 향후 추진계획

- 지하철9호선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민자유치사업 재고시 추진

## 2. 903정거장 위치변경 민원처리

- 민원인 : 강서구 공항동 22-39 이태관외 99인
- 민원내용 : 민원 8회(2002.5~2003.2), 청원1회(2002.8.22)
  - 903정거장이 공항시장앞 상가밀집지역에 계획되어 보상(107필지 2,890㎡)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 5호선 송정역과도 환승이 되지 않으니 보상대상이 적은 국제예식장앞으로 변경요구

### □ 903정거장 계획 배경

- 94.6월 기본계획에는 903정거장이 계획되지 않았으나
- 97.4월 주민설명회시 강서구청, 지역 시·구의원, 주민등의 요구에 의하여 97.8월 정거장이 추가 설치 계획되었음.

### □ 처리경위

- '02.10. : 본부장, 민원인(대표 이태관) 면담.
  - 답변내용 : 정거장 위치변경 불가사유 설명 및 정거장규모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유지 저축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 '02.10.15 : 시의회 교통위원회 정거장 위치변경 청원상정(심의 보류)

### □ 민원검토 내용

- 정거장 위치를 민원인 요구대로 변경할 경우
  - 토지는 2,890㎡에서 2,490㎡로 400㎡ 감소되고
  - 건물은 42동 3,649㎡에서 21동 3,665㎡로 21동 16㎡ 감소되나,
- 903정거장과 904정거장 사이의 본선구간 곡선반경이 당초 310m에서 250m로 급선형 되고,
- 역간 간격이 현재 800m 내외에서 630m 및 1000m 로 불균형하게 변경되어 효율성이 저하되며

- 지구단위계획상 공항지구중심에서 200m 이격되어 연계성이 상실되며
- 신규로 저축되는 건물(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동일한 성질의 민원이 예상되어 정거장 위치변경은 사용 및 유지관리상 곤란하여 수용불가

## □ 대책

- 정거장 건설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정거장 폭 6.18m 축소.
  - 가시설공법을 H-Pile + 토류벽CON'C + SRC배면 지반보강 ⇒ CIP/토류벽CON'C + 차수그라우팅후 합벽 방수공법 변경으로 2.68m 감소
  - ※ 가시설 2.68m축소 + 승강장 폭 3.5m 축소 = 총 6.18m축소
- 저축되는 토지 및 건물 최소화
  - 토지 : 총23개 필지 1,471m<sup>2</sup> 감소
    - ※ 당초 107개 필지 2,890m<sup>2</sup> ⇒ 84개 필지 1,419m<sup>2</sup>로 변경
  - 건물 : 총11개동(완파7동, 반파4동) 연면적 1,685m<sup>2</sup> 감소
    - ※ 당초 42개동(완파 10동, 반파 32동) 연면적 3,649m<sup>2</sup> ⇒ 31개동(완파 3동, 반파 28동) 연면적 1,964m<sup>2</sup>로 변경

## □ 향후계획

- '03. 4 : 도시철도 사업계획 변경 (시장)
  - ※ 02. 12. 24 도시계획시설 (철도) 변경결정 (강서구)
- '03. 5 : 감정평가 (강서구)
- '03. 7 : 보상협의 (강서구)
- '03. 10 : 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03. 10 : 수용재결금 지급 및 공탁
- '03. 11 : 건물철거(대집행)

# 지하철 3호선 연장건설 추진

지하철3호선 연장(가락시장역~오금역) 건설사업은 공구분할 및 입찰 방법과 기본계획 등 검토를 마치고, 현재 정상적 발주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연내 공사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음

## □ 사업개요

- 구 간 :가락시장역(8호선 환승)~경찰병원앞역~오금역(5호선 환승)
- 연 장 : 총3.0km(정거장 3개소 포함)
- 사업기간 : 2003 ~ 2009
- 사 업 비 : 4,397억원

## □ 추진현황

- '01.12.30 : 기본계획 용역 완료
- '02.11.22 : 2003년도 국고 확정(국비 30억원)
- '02.12.17 : 3호선 연장구간 도시철도기본계획서 제출(건설교통부)
- '02.12.30 : 입찰안내서 작성등 용역 착수(87백만원)
- '03.4.현재 : 입찰안내서 작성 및 심의중

## □ 공구분할 및 입찰방법

구 분	301공구	302공구
위 치	가락시장역~경찰병원사거리	경찰병원사거리~오금역
규 모	총연장 1.3km - 본 선 : 1.1km - 정거장 : 1개소 출고선 1선 추가	총연장 1.7km - 본 선 : 1.3km - 정거장 : 2개소
사업비	약 1,600억원	약 1,800억원
입찰방법	일괄입찰	일괄입찰

※ 조기 공사 추진을 위하여 Fast Track(조기착공방식)으로 발주



## □ 건설에 따른 주요내용

- 수서기지에서 가락시장역 방향으로의 출고선을 신설하여 차량운행 효율화 도모
  - 미설치시 수서역과 수서기지간의 차량운행시 역행운전이 발생하는 등으로 안전에 중대한 문제 발생
- 출고선 신설에 따라 오금역 후방에 설치하는 유치선 규모를 축소(4선⇒3선)
- 환승역 통합역사 설치 및 운영
  - 건설비의 절감과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환승역인 가락시장역과 오금역은 통합역사로 설치
  - 양 공사 통합역 건설에 합의
  - 통합역 설치로 인한 건설비 절감 약74억원

## □ 건의사항

- '02.11. 3호선연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국고예산으로 30억원이 확정되었으나
- 우리시가 확보하여야 할 45억원이 2003년 본예산에 미반영 되어 추경 예산에 반영 건의

## □ 추진계획

- '03. 4.20 : 입찰안내서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03. 4.30 : 건설비 확정 및 조달청 입찰의뢰
- '03. 5 :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실시
- '03.10 : 입찰
- '03.11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03.12 : 1차구간 공사 착공 및 실시설계 시행

#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확충

## 1. 종로 3가역 수평자동보도 설치

### □ 사업개요

- 통로 현황 : 수평거리 140m, 통로폭 15m
- 설치 대수 : 2대(양쪽)
- 장비 규격 : 길이 100m, 폭 1.25m

### □ 추진경위

- '01. 11. 21: 수평자동보도 설치방침 결정(시장방침1304호)
  - 환승통로 수평거리 50m이상, 통로폭 7m이상일 경우 설치 검토
  - ※ 해당역 : 1개소(종로3가역)
- '01. 12. 4 : 종로3가역 환승통로에 설치 추진
- '02. 11. 4 ~ '03. 2. 28 : 장비제작 및 설치완료(공인기관 검사필)
  - ※ 계약자 : 현대엘리베이터(주)

### □ 잔여공정 추진계획

- '03. 4. 30 : 부대시설 공사(천장마감, 조명 등)완료
- '03. 5월 중 : 가동예정

### □ 설치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 설치위치는 기존통로 Slab 위로 솟아 오름(통로하부는 3호선 승강장)
  - ※ 기계적인 검토후 디딤판(Step)까지 높이 축소 : 1.2m → 1.0m

- 무빙워크의 높이차이로 인한 일반보행자의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 통로 측면에 무늬 스텐인리스 강판으로 마감하고, 수평자동보도 통로 양쪽은 안전강화 유리를 설치하여 미관 및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
- 기존 천장을 높여 수평자동보도 보행구간의 층고를 2.4m 이상 확보하여 이용 승객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

《기존 설치 현황》

정거장명	위 치	규 격	수 량	비 고
석 계	1-6호선 환승통로	L=43m	2	
신 당	2-6호선 환승통로	L=75m	2	
이 수	4-7호선 환승통로	L=42m	2	
온 수	7-경인전철 환승통로	L=80m	2	
삼각지	4-6호선 환승통로	L=30~50m	8	
합 계			16	

※ 지하철 건설시 환승거리가 긴 장소에는 수평자동보도를 설치하였음 : 5개역 16대

□ 향후계획

- 기존 지하철 통로에 수평자동보도 설치하는 구조상 Slab 상부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 하여 이동 동선이나 미관상 불리(不離)
- 재난관리 체계상 개선방안을 시립대 윤명오 교수(도시방재연구센터소장)에게 자문결과 『유사시 진입억제 안내문부착』, 『통로이용자의 충돌방지를 위한 야광테이프 부착』, 『비상시 정지(수동·자동)기능 추가』, 『입출구에 소화기 비치』 등의 보완 의견이 있어 완전 보완후 가동
- 03. 4달까지 주위마감, 조명 등을 미려하게 시공완료하고 철저한 장비 점검과 시운전을 거쳐 '03.5월중 가동예정

## 2.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완공분 이관

운영중인 지하철 정거장에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노약자 등 누구나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완공분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지철·도철)에 조기이관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 사업개요

- 확충계획 : 263개역 총759대 설치
  - 엘리베이터 514, 에스컬레이터 199, 휠체어리프트 44, 수평자동보도 2
- 2003년까지 목표 : 199대 설치 (2002년 이전 54, 2003년 145)
  - 엘리베이터 114, 에스컬레이터 83, 수평자동보도 2

### □ 추진실적

《해당 공사에 이관완료》 - 총 61대(목표대비 30.7%)

- '02. 7월 이전 완공분 : 2개역 4대(에스컬레이터 4대)
- '02. 7월~현재까지(3월말) : 19개역 57대
  - 엘리베이터 24대, 에스컬레이터 33대)

《공사진행 및 계약추진 중》

- '03. 4 ~ 12월말까지 이관 예정분 : 52개역 138대
  - 현재 시운전 및 마감공사 진행 중 : 8개역 15대(5월중 이관예정)
    - ※ 엘리베이터 11대, 에스컬레이터 2대, 수평자동보도 2대
- '04.1월 이후 이관 예정분 : 190개역 560대
  - 토목공사중 117개역 366대, 계약추진중 73개역 194대

### □ 향후계획

- 엘리베이터는 '04.12말, 에스컬레이터는 '06.12말까지 완료
- 설계중인 46개역 112대는 '03.4월중 발주완료 (조달청)
- 도로굴착허가, 가로수이식, 가로등이전 등 자치구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사추진 할 계획임.

# 서울월드컵경기장 중재판정 결과 보고

서울월드컵경기장건설단이 해체되면서 우리본부로 이관된 서울월드컵 경기장건설관련 중재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중재판정이 내려져 대응 방법을 강구 중임

## □ 중재사건 개요

- 사건번호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02111-0009호
- 신청인 : 삼성엔지니어링(주) 대표 정 연 주  
※ 중재대리인 : 임 병 일 변호사와 4인
- 피신청인 : 대한민국(조달청,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 중재대리인 : 조 현 우 변호사
- 중재인 : 최정범(새길엔지니어링 대표), 정찬교(수원대 교수), 강대성(변호사)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8,963,569,41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분 송달일부터 중재판정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중재신청 내역》 - 28,963백만원

- 돌관공사 ----- 13,760 백만원
- 추가공사 ----- 5,075 백만원
- 공법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추가 ----- 3,215 백만원
- 서울시 심의시 요구사항의 반영 ----- 2,303 백만원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564 백만원
- 공사이행과 무관한 제3자의 방문 또는 행사 ----- 1,037 백만원
- 기 타 ----- 2,009 백만원

□ **서울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중재신청 경위**

- '01. 12. 27 : 서울월드컵경기장 준공(금액 : 1,922억원)
- '02. 2. 1 : 중재신청(삼성엔지니어링 ⇒ 대한상사중재원)
- '02. 4. 30 : 중재 1차 심리(중재합의 부존재 사유로 각하 요청)
- '02. 12. 23 : 중재 6차 심리(현장 검증) - 심리 종결
- '03. 4. 1 : 중재판정(송달일 4.7)

□ **중재판정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726,034,4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2.2.18부터 완제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자 년 2억2천만원)
-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중재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신청인의, 나머지는 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서울시 부담 1,800만원)

《중재판정 세부내용》

(단위 : 천원)

연번	대 상 항 목	청구금액	판정금액	비고
1	수익시설 관련 설비공사 범위변경	4,614,715	2,000,000	
2	PAC 설치 추가공사	27,572	24,000	
3	냉각탑 커버 및 PAC 공기정화기 추가 설치	12,271	5,000	
4	부가가치세법의 변경	470,300	470,300	
5	페이퍼 타올 변경	52,914	40,000	
6	폐기물 처리비용	886,964	800,000	
7	가설공법의 변경으로 인한 부분	86,734	86,734	
8	제3자 방문 및 행사 비용	1,036,643	300,000	
<b>합 계</b>		<b>7,188,115</b>	<b>3,726,034</b>	총신청금액 의12.88%

□ **중재판정의 효력**

-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중재법 제35조)

## □ 중재판정 취소의 소 제기기간(불변기간)

- 중재판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03.7.6일 까지)
-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중재법 36조)

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무능력자이었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무효이거나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무효인 사실

나.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라.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 고문변호사 의견

- 피신청인이 「중재판정 취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 의하여 승소 판결(중재판정취소)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 가령 중재판정 취소후 신청인이 다시 법원에 공사대금청구 민사소송을 청구할 경우, 피신청인측이 중재판정금액보다 더 적은 판결을 선고받아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도 적어 보이므로, 피신청인측은 중재판정에 불복할 실익이 없고, 승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 향후계획(중재판정 승복여부 검토)

- 우리시가 일부승소를 하였으나, 중재판정 금액이 37억원인 고액인 점을 감안하여 법무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 「중재판정 취소의 소」 제기시 승소가능성 등을 추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쟁송여부를 결정하는 등 우리시 입장을 정리할 예정임.